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제정 2009. 7. 7.  
개정 2010. 1. 29.  
개정 2011. 10. 27.  
개정 2013. 6. 4.  
개정 2016. 7. 1.  
개정 2023. 1. 1.  
개정 2025. 1. 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생명보험범죄방지위원회 규정」에 의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보험범죄방지 담당부서)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발금액”이라 함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기소, 송치 시점)에 보험금 지급금액과 사건적발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의료기관 소속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실태를 제보한 경우
  - 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모집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보험사기 실태를 제보한 경우

**제3조 【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접수】** 보험회사는 보험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방문, 전화, FAX,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사의 양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5조 【지급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서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송치)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
  2. 제1호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부서장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협회를 제외한 제2조제1호 기관에 신고된 사항이 해당 기관에서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별지 제3호> 서식(공문)으로 협회에 포상금 지급 요청 또는 관련사항이 통보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 후 협회에 포상금 지급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포상금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 ② 포상금은 제2조제3호의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제1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생명보험 관련 적발금액에 한정한다.
- ③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인의 경우 추가지급 금액은 <별표 제2호>에 의거하여 정한다.
  1.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제7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2.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6. 동일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
7.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조(진술, 면담 등)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포상금의 지급기한】** 포상금은 생명보험범죄방지 부서장협의회(이하 “부서장협의회”라 한다)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 【지급 절차】** 협회는 제8조에 따라 포상금액을 정하여 부서장협의회에 상정하고 부서장협의회 결정 후 보험범죄 공동조사기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의 분담】** 보험사는 적발금액 비율(단, 적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직전년도 협회비 납입비율로 산정)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담하며 차년도 「보험범죄 공동조사기금」 정산시 각사별 포상금 분담액을 협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 처리의 통보】** 보험회사는 신고자에게 제11조에 의거하여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임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 FAX,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보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보험범죄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개정 이전 보험범죄 신고건은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의 보험범죄 신고건에 대한 포상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제 1 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적발 금액 (생명보험 관련)	포상금
보험사기 행위	5억원 이상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0.5%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0만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0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행위	-	100만원

- 1)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 2)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3)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결과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4)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송치)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제 2 호>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인센티브) 기준**

**[산정기준]**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부서장협의회 의결)

기본 인센티브	구체적 물증제시	적극적 수사 협조	보험범죄 적발규모	사회적 파급력
+ 20%	+ 20%	+ 20%	+ 20%	+ 20%

**[평가방법]**

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실무자협의회시 설명)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구 분	S	A	B	C	D	E
기본 인센티브	+ 20%					
구체적 물증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 20%	+ 16%	+ 12%	+ 8%	+ 4%	0%
적극적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 20%	+ 16%	+ 12%	+ 8%	+ 4%	0%
보험범죄 적발규모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 20%	+ 16%	+ 12%	+ 8%	+ 4%	0%
사회적 파급력 (공중파 방송 보도 등)	+ 20%	+ 16%	+ 12%	+ 8%	+ 4%	0%



<별지 제 1 호>

보험범죄 신고접수 양식

◆ 신고자 → 회사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신 고 자		연 락 처			
신고 내용					
	의심자 성명		생 년 월 일		
	의심자 주소		지 급 사 유		
	관 련 병 원				
해 당 사		담당자		연락처	
처리내용					
참고사항					



<별지 제 2 호>

**보험범죄 신고접수 불가 안내 통지서**

◆ 회사 → 신고자

수신자 : ○ ○ ○

귀하가 신고한 보험범죄에 관한 포상금 지급여부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급여부 : 불가
2. 불가사유 :

년 월 일

○○생명 보험사기조사 담당부서장 ○ ○ ○ (인)

문의처

02 - XXX - XXXX



<별지 제 3 호>

**포상금 지급신청 공문(내용)**

◆ 회사 → 협회

2022.○.○

- 공문번호 : ○○ 제2022-001
- 수 신 : 생명보험협회
- 참 조 : 보험심사부 보험사기에방팀
- 제 목 : 홍길동 허위입원 건 관련 제보자 포상금 지급 협조요청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건 명 : 홍길동 허위입원 건
- 수사기관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팀
- 송치일자 : 2022.○.○
- 형제번호 : 대전지검2022형제○○○○
- 적발금액 : 2.5억원
- 적발인원 : 구속○명, 불구속○명
- 포상금액 : 600만원
- 관련업계 종사자 구분 : 의사, 간호사, 사무장, 일반인 등 기재

- 첨 부 : 1.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 사건개요, 수사기관, 진행경과, 적발금액(생보업계), 포상금액 등 기재
2.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3.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기재사항 각 1부. 끝.



(첨부 1)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 사건 명																
◆ 공동조사 여부	<b>Y / N</b>															
◆ 사건개요(협의점)																
◆ 수사기관																
◆ 진행경과																
◆ 적발금액(관련 생보사 금액)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회사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발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삼성생명</td> <td style="text-align: right;">62,345,124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한화생명</td> <td style="text-align: right;">5,728,142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교보생명</td> <td style="text-align: right;">41,417,561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계</b></td> <td style="text-align: right;"><b>109,490,827원</b></td> </tr> </tbody> </table>	연번	회사명	적발금액(원)	1	삼성생명	62,345,124원	2	한화생명	5,728,142원	3	교보생명	41,417,561원	<b>계</b>		<b>109,490,827원</b>
연번	회사명	적발금액(원)														
1	삼성생명	62,345,124원														
2	한화생명	5,728,142원														
3	교보생명	41,417,561원														
<b>계</b>		<b>109,490,827원</b>														
◆ 적발인원	구속○명, 불구속○명															
◆ 형제번호																
◆ 포상금액																
◆ 관련업계 종사자 여부	의사, 간호사, 사무장, 설계사 등															
◆ 기타 특이 사항																



(첨부 2)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명보험협회 귀중

**제보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①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 정보동의서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증지에 관한 안내**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대표번호), 서면 등을 통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관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증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동일 목적으로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기타소득 과세, 포상금 지급, 영수증 및 동의서 관리 등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수집·이용할 고객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후 즉시파기

- (보유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한 과세 신고가 완료된 시점까지
-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한 과세 신고가 완료된 시점까지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 협회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

동 의 자 : (인)



(첨부 3)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기재 사항**

■ 사건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지급 처 :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계좌명의 :